근로복지공단법안 (김형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449

발의연월일: 2025. 5. 9.

발 의 자:김형동・우재준・배준영

조경태 · 김소희 · 유용원

서일준 • 박덕흠 • 조지연

김대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징수,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,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 한 사업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설립근거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의 일부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단의 역할 에 상응하는 법률적 지위 부여가 미흡한 실정임.

이에 산재·고용보험 이외에 임금채권, 퇴직연금, 근로복지 등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공단의 위탁사업들을 통합하여 규정하고, 업무상 재해에 관한 연구,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, 공단 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, 정책 환경 변화 등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법을 제정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, 임금채권보장사업을 운영하고 근로자의 복 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,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 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, 고용보험, 근로자 복지에 관한 사업, 국 제협력에 관한 사업 및 업무상 재해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함(안 제6조).
- 다.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'노동이사제'를 도입하여 공단의 공 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,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촉진함(안 제7조).
- 라. 공단의 수입에 정부수탁사업과 관련한 전입금, 국가 보조금을 포함시켜 산재보험 지급 등 공단의 업무특성을 재무제표에 충실히 반영하고, 대내·외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함(안 제18조).
- 마. 공단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, 「고용보험법」,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임금채권보장법」, 「근로복지기본법」 등의 법령에서 정한 공단 이사장 권한의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분사무소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함(안 제21조).

근로복지공단법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 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, 임금채권보장사업을 운영 하고,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법인격) 근로복지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은 법인으로 한다.
- 제3조(설립등기)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(分事務所)의 설치등기, 이전 등기,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조(사무소)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 - 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수 있다.
- 제5조(정관)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 - 1. 목적
 - 2. 명칭

- 3.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
- 4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- 5. 이사회에 관한 사항
- 6. 사업에 관한 사항
- 7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8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- 9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10.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- 11. 공고에 관한 사항
- ② 공단의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6조(사업)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1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(이하 "산재보험법"이라 한다)과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보험료징수법"이라 한다), 「임금채권보장법」에 따른 보험가입자와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·유지
- 2.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
- 3.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결정과 지급
- 4.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
- 5.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 운영
- 6.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의 재해 연구

- 7.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 · 요양 및 재활
- 8.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 · 검정 및 보급
- 9.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
- 10.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제도 운영 및 관리 · 운용
- 11.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26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서 수행하는 업무
- 12.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·운용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
- 13. 산업재해보상보험, 고용보험 및 근로복지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
- 14.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- 15. 제5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
- ② 공단은 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, 연구기관 등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급여자문위원회를 둘 수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.
- 제7조(임원의 구성 등)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4명

- 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.
- ② 이사장, 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하여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 따른다.
- ③ 비상임이사(제4항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.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같은 수로 하되, 노사 어느 일방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.
- 1.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
- 2.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- 3. 사회보험 또는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 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
- 4.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 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중에서 근로자 대표(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)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
- ④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기획재정부에서 공단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

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

- 2.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 지명하는 1명
- ⑤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직무 수행에 드는 실제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.
- 제8조(임원의 임기)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
- 제9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.
- 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 - 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제11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

- 한 법률」 제22조제1항, 제31조제7항, 제35조제2항·제3항, 제36조제 2항 및 제48조제4항·제8항에 따른다.
- 제12조(임직원의 겸직 제한)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 - ② 상임임원이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 따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.
- 제13조(이사회) ① 공단에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 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 -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
 -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-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 구로 소집하고,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제14조(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) ①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직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한다.
 -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- 제15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공단의 임원과 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

으로 본다.

- 제16조(업무의 지도·감독)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②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,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을 변경하도록 명하는 등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제17조(공단의 회계)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 - ② 공단은 보험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
 - ③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.
- 제18조(공단의 수입)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, 전입금, 국가보조금 및 기부금
 - 2. 제6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입 및 부대수입
 - 3. 제19조에 따른 차입금 및 이입충당금

- 4. 제20조에 따른 잉여금
- 5. 그 밖의 수입금
- 제19조(자금의 차입 등) ①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(국제기구·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)할 수 있다.
 - ②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면 산재보험법 제99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범위에서 고용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에서 이입(移入)하여 충당할 수 있다.
- 제20조(잉여금의 처리) 공단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공단의 회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별로 구분하여 손실금 을 보전(補塡)하고 나머지는 적립하여야 한다.
- 제21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분사 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②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22조(수수료 등의 징수)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고용노 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 시설의 이용료나 업무위탁 수수료 등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- 제23조(자료 제공의 요청) ① 공단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보험

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질병관리청·국세청 ·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·단체에 주민등록·외국인 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·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.
-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.
- 제24조(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)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라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(「개 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)할 수 있다.
 - 1. 산재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
 - 2. 산재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
 - 3. 산재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
 - 4. 산재보험법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
 - 5. 산재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확인
 - 6. 산재보험법 제66조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
 - 7. 산재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직업재활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

- 8. 산재보험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수급권자의 유족 여부 확인
- 9. 산재보험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확인
-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5조(출자 등)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6조(비밀누설 등의 금지)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7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공단이 아닌 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 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- 제28조(「민법」의 준용)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29조(벌칙) ①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

- 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② 제2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30조(과태료) ① 제27조를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 동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으로 본다.
 -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의 재산과 권리·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 에 표시된 근로복지공단의 명의는 공단의 명의로 본다.
 -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사업, 처분, 그 밖의 행위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행한 신청,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행위 또는

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-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.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근로복지공단의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⑤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다.
- 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(제10조부터 제35조까지)을 삭제한다.

제38조제1항 중 "공단"을 "「근로복지공단법」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제43조제1항제1호 중 "제11조제2항에"를 "「근로복지공단법」 제6조 제2항에"로 한다.

제127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129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.

②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본문 중 "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"을 "「근로복지공단법」에 따른 근로복지공단"으로 한다.

③ 「고용보험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0조제1항 중 "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 공단"을 "「근로복지공단법」에 따른 근로복지공단"으로 한다.

④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전단 중 "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근로복지공단"을 "「근로복지공단법」에 따른 근로복지공단"으로 한다.

⑤ 「임금채권보장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"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 공단"을 "「근로복지공단법」에 따른 근로복지공단"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"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"을 "「근로복지공단법」에 따른 근로복지공단"으로 한다.

제27조 중 "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근로복지공단"을 "「근로복지공단법」에 따른 근로복지공단"으로 한다.

⑥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후단 중 "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"을 "「근로복지공단법」에 따른 근로복지공단"으로 한다.

⑦ 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"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근로복지공단"을 "「근로복지공단법」에 따른 근로복지공단"으로 한다.

제32조 중 "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근로복지공단"을 "「근

로복지공단법」에 따른 근로복지공단"으로 한다.

- 제4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근로복 지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인용한 것 으로 본다.
 -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